

충청북도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

1993. 9. 18

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3년 9월 4일

· 회부일자 : 1993년 9월 6일

다. 상정일자 : 제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제1차 건설위원회 (1993. 9. 13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이 종 익)

가. 제안이유

도로관리사업소가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기에 대하여 중기적정 보유 및 현대화 계획추진에 따라 중기의 감량운영과 중기유지 사무간소화를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개정 준칙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중기의 의무사용 대상공사 범위축소 (조례 제4조 개정)

· 도 및 시·군 시행 도로유지 보수공사 및 재해긴급복구공사 → 사업소 시행 도로유지 보수공사 및 재해긴급복구공사

○ 중기투입계획 수립 대상공사 범위 축소 (조례 제5조 개정)

· 도 및 시·군 관리 도로유지보수공사 → 사업소 도로유지보수공사

○ 도, 시, 군 도로유지보수공사에서의 관중기 사용 및 민간중기 사용 승인제 폐지
(조례 제10조 제2항 개정)

- 도, 시, 군 도로유지보수 공사에 관중기 사용신청 → 도로관리사업소 보유 중기 사용신청제도 폐지
- 도로관리사업소 보유관중기 투입불가시 민중기 사용승인 → 민간중기사용승인제도 폐지

○ 중기관리특별회계 폐지 (조례 제23조 내지 제29조)

- 중기관리특별회계 시행일 : '94. 1. 1 → 일반회계로 이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오 병 천)

중기의 적정보유 및 현대화 계획 추진에 따라 중기의 감량운영과 중기유지 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'93. 6. 16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시도중기사업 개선 지침의 동 조례 준칙에 의거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등을 고려해 볼때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의 폐지는 동 회계 세출 예산집행등을 위하여 회계년도말까지 유예하는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(신완섭위원) : 도로관리사업소의 효율성등을 감안할때 대폭 감축 의향은?

답변 (이종익국장) : 년차적으로 감축방침 (94년까지 중기보유대수 49대 → 41대로 감축)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참석위원 6인 만장일치)

7. 소수의견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9. 심사보고 첨부서류

가. 충청북도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 1부.

나. 신구조문 대비표 1부.